#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14

발의연월일 : 2020. 9. 11.

발 의 자:조승래·강병원·고영인

박영순 • 박홍근 • 양정숙

오영환 • 이용빈 • 이정문

최인호 · 최종윤 의원

(11인)

#### 제안이유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접속장치를 통해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시민들의 편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20만대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못하고 있음.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민들의 통신복지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복지사업들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가정이나 소규모 조직은 비밀번호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쉽게 보안 관리가 가능하나, 많은 불특정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공와이파이는 같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

능하고, 무선랜의 무선구간은 반드시 암호화 되어야 하나 암호화가 없을 경우 모든 통신 내역이 노출되는 등 보안에 취약함.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가계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인프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음. 이에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 선진국으로도약하는 데 공공와이파이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와이파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마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 제공기술 표준화, 정기적 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 4조까지).

#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와이파이"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 신역무를 말한다.
- 2. "공공장소"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이 소유하거 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의미한다.
- 3. "공공와이파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이 공공 장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 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 4.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정비"란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유지·관리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설치·정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장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수립 등

- 제4조(공공와이파이위원회) ①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며 그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변경 · 평가 · 점검에 관한 사항

- 2.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표준 설정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와이파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공공와이파이 시설의 제공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3. 공공와이파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5. 공공와이파이의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6. 공공와이파이의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7.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8.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 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공공와이파이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위 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 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전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이용 성과평가
  - 2. 기본계획에서 위임한 시행계획
  - 3. 해당 연도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운용계획

-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이로 정한다.
- 제8조(공공와이파이의 이용현황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 행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별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사항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와이파이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공 공와이파이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와이파이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통합관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 관리
- 2. 공공와이파이 장애현황 모니터링
- 3. 공공와이파이 관련 민원 대응
- 4. 공공와이파이 제공 장소 위치정보 제공
- 5. 공공와이파이 관련 정기적 현장조사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와이파이 제공에 필요한 업무
- ④ 국가는 통합관리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새로운 서비스 개발·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공공와이파이 제공기반 조성

제12조(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공와이파이 기술의 표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 공와이파이의 제공형태, 제공기술 표준화 및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공와이파이의 제공기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 공기관 등은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와이파 이시설을 정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설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와이파이의 설치·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공공 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